

청주지방법원 2020. 9. 10 선고 2019가단9675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전 문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송 담당변호사 최원지

피고1. B

2. C

변론 종결2020. 8. 13.

판결 선고2020. 9. 10.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청주지방법원 등기와 2006. 7. 5. 접수 제38442호로 마친 A지분전부근저당권설정등기의,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청주지방법원 등기와 2008. 2. 4. 접수 제5952호로 마친 A지분전부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 B에 대하여, 피고 B은 무변론선고기일을 통지받고 변론재개신청을 하였으나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피고 C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판사이현경

별지